

2021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(제3차)

구 분	인 원
정 수	12인
재 적	12인
참 석	9인

1. 회의 개요

- ☐ 일 시 : 2021. 4. 29.(목) 16:30 ~ 17:30
- ☐ 장 소 : 믿음관 3층 세미나4실
- ☐ 참 석 : 재적위원 12명 중 9명 참여
 - 교직원위원 : 강정원, 심화섭, 류재경, 김남중, 김준기
 - 전문가위원 : 정종철
 - 학생위원 : 최윤희, 임예진, 채수경
 - 배석 : 송동훈(기획팀원), 정영호(시설팀원)
- ☐ 불 참 : 김용철, 지은별, 문희남

2. 회의 안건

- 1) 「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」 개정에 관한 사항
- 2) 임의건축기금 인출 사용 변경에 관한 사항
- 3) 잉여금 처리 원칙에 관한 사항

3. 회의 내용

- 1) 제1호 안건 : 「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」 개정에 관한 사항

◎ 주요 토의내용(요지)

- 강정원 위원장 : 「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」 제7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12명 중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본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

간 서 명	강 정 원	심 화 섭	채 수 경
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- 강정원 위원장 :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제1호 안건 [「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」 개정에 관한 사항]을 상정하며, 본 안건에 대하여 송동훈 기획팀원에게 설명을 요청함
- 본 안건에 대하여 송동훈 기획팀원이 설명함
 - 개정 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5조(위원 구성방법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③ (신 설)	제5조(위원 구성방법) ① (현행과 동일) ② (현행과 동일) ③ <u>외부</u> 전문가 위원은 학생대표단체의 의견을 <u>수렴하여</u> 기획처장이 추천하고, 총장이 위촉한다.
제7조(회의) ① ~ ③ (생 략) ④ (신 설) ⑤ (신 설)	제7조(회의) ① ~ ③ (현행과 동일) ④ <u>감염병 등의</u> 상황에 따라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. ⑤ 화상회의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서면의견서로 갈음한다.
	부 칙<2021.04.00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<u>전문가위원 위촉 적용례</u>) 이 규정 시행 이후 다음 <u>외부 전문가 위원 위촉시부터</u> 적용된다.

- 개정사유

- 제5조(위원 구성방법) : 전문가 위원 위촉시 학생 측 대표단 권한 부여 필요
- 제7조(회의)
 - 1)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할 경우, 비대면 회의를 운영하는 방식 및 비대면 회의에 있어서 의사결정 방법 규정 마련 필요
 - 2) 현행 비대면 회의 관련 규정 부재

◎ 의결 사항

- 전체 위원들의 동의와 제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함
 - [「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」 개정에 관한 사항]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함

간 서 명	강 정 원	송 동 훈	최 수 보
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2) 제2호 안건 : 임의건축기금 인출 사용 변경에 관한 사항

◎ 주요 토의내용(요지)

- 강정원 위원장 :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제2호 안건 [임의건축기금 인출 사용 변경에 관한 사항]을 추가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정영호 시설팀원에게 설명 요청함
- 본 안건에 대하여 정영호 시설팀원이 설명함
- 자세한 내역은 배부된 회의자료로 대체함
- 변경 전 234,950,000원에서 226,620,000원으로 긴급 발생한 시설 보수공사로 인하여 기존에 계획된 사용내역 및 총액이 변경되었음
 - 수입 : 임의건축기금 인출(비등록금) 226,620,000원
 - 지출 : 건축물관리비(비등록금) 226,620,000원

◎ 의결 사항

- 전체 위원들의 동의와 제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함
 - [임의건축기금 인출 사용 변경에 관한 사항]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함

간 서 명	강 정 원	정 영 호	최 수 영
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3) 제3호 안건 : 잉여금 처리 원칙에 관한 사항

◎ 주요 토의내용(요지)

- 잉여금 처리 원칙 개요
 - 등록금회계 예산 집행 후 잉여금이 발생하여 기금회계전출금을 본예산 편성시보다 늘리려고 하거나 결산 이월금이 본예산 편성시 예측한 규모보다 늘어난 경우에 대한 잉여금 처리 원칙을 마련하고자 함
 - ※ 잉여금 : 본예산에서의 전기이월자금과 결산이 반영된 추가편성예산의 전기이월금의 차이(등록금회계의 전기이월자금에 한함)
 - 등록금 예산 집행 후 발생한 잉여금에 대한 처리 원칙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
- 잉여금에 대한 처리 원칙 방향
 - 대학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학생 직접교육비에 집중투자
 - 장학금 지급률 향상
 -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로 교육비 환원을 향상
 - 실험실습기자재, 집기비품 및 학생 복지시설 확대 등 교육환경 인프라 개선에 사용
 -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투자

◎ 의결 사항

- 전체 위원회의 동의와 제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함
 - [잉여금 처리 원칙에 관한 사항]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함

4. 행정사항

- 위의 회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간서명은 참석위원 중 위원장, 교직원 위원 1명, 학생 위원 1명 대표로 간서하며 참석 위원들은 서명날인하기로 함

간 서 명	김정현	서희재	채수경
-------	-----	-----	-----

2021. 4. 29.

위원장	강정원	(인) 강정원
위 원	심화섭	(인) 심화섭
위 원	류재경	(인) 류재경
위 원	김남중	(인) 김남중
위 원	김준기	(인) 김준기
위 원	김용철	(인)
위 원	정종철	(인)
위 원	최윤희	(인)
위 원	임예진	(인)
위 원	지은별	(인)
위 원	채수경	(인)
위 원	문희남	(인)

간 서 명	강 정 원	심 화 섭	채 수 경
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